

채권 재양도 예정 통지서

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의 권리를 2026년 01월 23일자로 (주)카카오뱅크에 재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(주)카카오뱅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(주)카카오뱅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(주)카카오뱅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(www.bkasset.co.kr)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양도예정채권 명세
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5.07.21)

No	성명	양수회사	원채권사	생년	성별	최초대출원금	원금잔액	기타비용	소멸시효 완성여부	장래이자 면제여부
1	한*수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62	남	3,000,000	2,553,358	-	N	Y
2	박*예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2001	여	3,000,000	1,692,958	-	N	Y
3	이*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98	남	5,000,000	2,502,979	-	N	Y
4	이*하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5	남	5,000,000	119,825	-	N	Y
5	이*하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5	남	2,600,000	120,054	-	N	Y
6	이*하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5	남	3,000,000	2,662,305	-	N	Y
7	김*정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0	여	4,200,000	1,986,165	-	N	Y
8	김*정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0	여	14,000,000	2,937,019	-	N	Y
9	김*정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0	여	9,300,000	7,873,845	-	N	Y
10	김*정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0	여	1,200,000	1,015,726	-	N	Y
11	한*아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98	여	2,000,000	1,856,173	-	N	Y
12	이*경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90	여	3,000,000	3,000,000	-	N	Y
13	구*삼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9	남	2,500,000	1,672,676	-	N	Y
14	이*람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5	여	3,000,000	2,955,544	-	N	Y
15	김*근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70	남	3,200,000	3,195,428	-	N	Y
16	오*석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6	남	20,600,000	15,908,601	-	N	Y
17	오*석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6	남	4,900,000	3,964,293	-	N	Y
18	오*석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6	남	7,500,000	2,061,156	-	N	Y
19	박*이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1987	여	3,000,000	2,978,125	-	N	Y
20	이*재	(주)카카오뱅크	(주)카카오뱅크	2002	남	3,000,000	2,033,599	-	N	Y

-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-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·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02-6092-00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